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년 3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정주여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안 제19조의4)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으로 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 제한(10호 미만인 경우 200미터를 이격한 후 주택수당 30미터를 더한 거리 이격)

※ 특정건축물 : 자원순환관련시설(나목부터 마목까지만 해당한다) 및 제26호 묘지관련시설(라목만 해당한다)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면적 기준 마련(안 제13조)
- 용적률 완화 사항 개정(안 제54조)
-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7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개선사항 없음 [기획감사실-379(‘19.1.10.)]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 [주민복지과-3186(‘19.1.14.)]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 (예고기간 : ‘19.1.17. ~ ‘19.2.7.)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건축물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
제5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을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로,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를 “최대한도”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제54조제3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5. 영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제75조를 삭제한다.
별표 2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8]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제19조의4 관련)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지구·구역의 경계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
가. 영 제31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200미터를 이격한 후 주택수당 30미터를 더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비고
1) “특정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나목부터 마목까지만 해당한다) 및 제26호 묘지관련시설(라목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신 설>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4(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건축물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② (생략)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2015.7.6. 개정내용]	③ ----------.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 최대한도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신 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신 설>	5. 영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